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  
제 3360호  
2016. 7. 19.(화)

함께  
서울



**목 차**

◆ **자치법규**

**[입법예고]**

제2016-1530호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..... 2

## 자 치 법 규

### 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1530호

###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7월 19일  
서울특별시장

####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가.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 개선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총인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, 재해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기 쉽도록 별표 2의 ‘하수도사용료 요율표’ 서식에 명시함.(안 별표 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물재생계획과,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(전화 : 02)2133-3787, FAX: 02)2133-1042, E-mail: kery123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# 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									
	람								